

국내정보통신서비스시장의 자유화와 미국의 개방압력

유 일 선*

Deregulation in the domestic market of telecommunication and America's threat to open its market

Il-Seon Yoo

< 目 次 >

Abstract

1. 서 론
2.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3.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4. 한국의 정보통신제도의 현황
5. 자유화에 따른 주요국의 정보통신

제도

6. 미국의 정보통신시장에 대한 개방압력
7. 결 론

참고문현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makes possible the rapid delivery of information from the long distance and the manipulation of various information we thought impossible a few years ago. Such a phenomenon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modern life style. So modern society is often referred to as the society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Most of countries have so far recognized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as public goods which induces the market failure and need a large investment cost. Therefore the theory of natural monopoly that the government has to control this industry exclusively in order to minimize the investment cost and provide all people with basic services, is considered to be valid.

However,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innovation makes telecommunication combined with computer technology, which accelerate the scope and speed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bring a variety of services necessary for the whole industry.

Such a transformation which the information service is used as intermediate goods in the production activity, has developed economic structure into more soft one and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market structure. That is, the monopoly system underlying the principle of scale economy cannot meet the different information services that people demand.

In that point, most of countries try to reform the market structure by introducing the competitive principle.

* 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해양무역학과

The aim of this paper is, first of all, to introduce the situ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 liberaliza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USA, Japan, Britain, France, German—and then not only to analyse the situation of Korean telecommunication & information market compared with the above country but to investigate the desirable direction of liberalization under America's threat to open the market.

1. 서 론

경제성장은 한 사회가 노동력 및 자연자원을 동원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기술진보 및 확산, 자본축적, 노동력의 교육, 훈련을 통한 질적수준의 개선, 시장 기구발달등 산업과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관찰되었다. 즉 토지 중심의 1차 산업의 특징을 갖는 농경사회는 경제가 성장해 갈에 따라 생산요소는 소비재와 자본재를 생산하는 2차 산업으로 더 나아가 가공된 재화를 이용해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중간재로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3차 산업으로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러한 이행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보통신부문이다. 즉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신속한 원거리 전달, 다량의 정보처리를 가능케하여 현대 인간 생활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현대산업사회에 정보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이에 따라 현대사회를 정보사회 또는 정보사회로의 이행기로 보고 있다. 이런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정보통신분야는 민간의 폐해를 막고 통신망의 건설에 따르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극소화하고 전국민에게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공재적인 성격때문에 자연독점론이 타당성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에 의해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차 대전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의 가속화는 이 독점체제의 당위성을 약화시키면서 산업구조의 질적 변화를 촉진시켜오고 있다. 즉 전기통신의 급속한 기술진보는 여러가지 선택적 기술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전기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기술혁신의 범위와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금융, 유통,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걸쳐 다종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보급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가 생산활동에 중요한 생산요소로 참여함으로써 경제구조는 소프트화 및 서비스화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시장조직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상이한 환경에서 발전해온 정보처리산업과 전기통신산업이 결합됨으로써 전혀 새로운 정보통신산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규모의 경제논리를 약화시켜 민간의 진출욕구를 촉진하고 한편 독점적 체제로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어가는 정보통신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경쟁적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내부의 체제개편압력에 부응하여 각국에서는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으로 정보통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즉 자유화 정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80년대에 이르러 미국을 선두로 한 정보통신의 자유화정책은 영국 및 일본등 여타 국가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빠른 속도로 파급

되고 있다.

특히 국가에 의한 기간산업의 운영을 중시해 온 서유럽제국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 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동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쟁원리의 도입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자유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 및 상품화가 촉진되어 각국 통신사업체의 시장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동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국들의 새로운 국제분업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폐쇄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국적 기업(MNC : Multinational Corporation)과 각국의 전기통신사업체사이에 정보통신의 이용을 둘러싼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각국간의 정보통신정책의 차이는 첨예한 국제적 무역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동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신한 미국은 MNC의 효율적 경영과 하락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부문의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 GATT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무역기조로의 정착을 추진하는 반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에 대한 정보통신부문의 시장개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의 전기통신시장의 개방과 한국 EC의 우선협상국(PFC)지정등이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의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정보통신산업의 재편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비추어 각국은 자기 국가의 실정에 맞는 최적정책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 동분야의 경쟁력이 미약하고 이제 자유화 논의가 발아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개방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적정책 및 제도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기서는 주요 선진국의 자유화 진전에 따른 정보통신제도의 개편현황과 각국의 미국 개방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을 비교분석하고 또한 한국의 자유화진전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정보통신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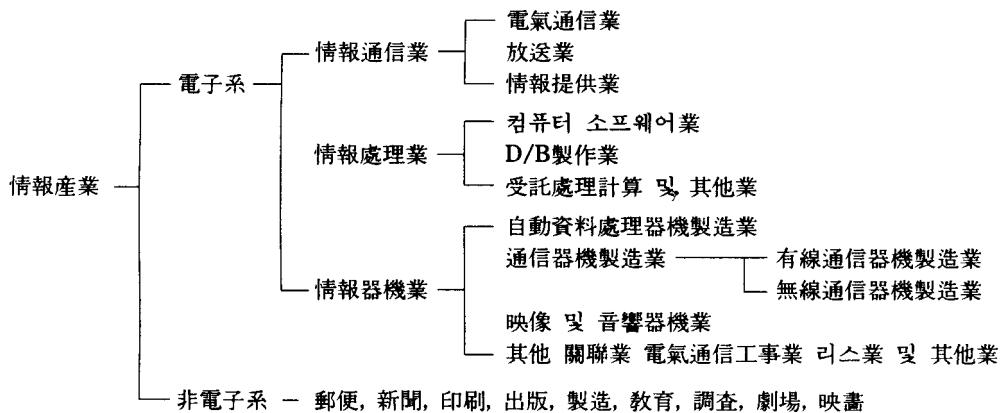
정보통신산업이란 넓은 의미로 정보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컴퓨터 처리와 통신이 융합되어 제공되는 고도서비스로 사용되기도 하여 일관된 견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먼저 정보산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보를 취급하는 산업으로서 정보의 수입 가공 처리 저장 유통 판매 전송 등을 수행하는 제 활동 및 관련제조업으로 정의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圖 2-1]과 같다.

여기서는 성극제(1986)가 정의한 것처럼 정보통신산업을 전자계 정보산업으로 해석하여 전신 및 전화의 전기통신업, 데이터베이스 유통업 등의 정보제공업과 온라인 등의 정보처리업 및 이와 관련된 정보기기업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한정시킨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기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시장이 형성되는데 여기서는 통신서비스 및 통

(圖 2-1) 情報産業의 分類



신단말기기, 통신망 정비시장을 말한다. 이중에서 통신서비스는 전신 전화 등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정보를 전송, 교환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정보거래) 등과 같이 내용변경을 수반하는 데이터 서비스인 부가가치서비스 즉 정보통신서비스로 나뉘어진다.

3.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정보통신산업은 컴퓨터와 전기통신이 결합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되어 감에 따라 통신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 유통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전체의 정보화와 효율화를 제고시켜¹⁾ 경제사회 전체의 정보화를 진전시킴과 동시에 하드웨어의 수요유발을 촉진시켜 컴퓨터와 정보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간산업적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통신산업이 현대사회를 규정할 만큼 중요산업이 된 것은 정보통신서비스가 갖는 고유한 특성때문이다. 즉 모든 다른 서비스의 기초를 제공하고 다른 일반 상품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정보통신서비스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도 자연히 그 중요성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정보통신서비스는 다른 일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정보 데이터 등 정보통신서비스는 그 자체가 상품이며 최종재를 산출하는 중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동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와 수요자가 통신회선에 의해서 직접 연결되므로 다른 공산품이나 서비스처럼 일시적인 거래에 그치지 않고 최초의 거래관계로 상당기간 동안 고객의 관계가 지속된다. 그러므로 처음에 외국에서 동서비스의 수입하면 지속적인 수입을 초래하고 반대로 수출시에는 안정적인 고객확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째, 동서비스는 정보의 판매와 원시자료의 입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개도국들의 경우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은 자국의 원시자료가 선진국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가공 처리 및 축적된

1) 이천표, 서비스산업 정보화와 경제구조 조정, 『정보통신의 발전과 경제구조조정』통신개발연구원 : 89 - 108

정보로 비싼 가격으로 사야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외종속이 우려된다.

네째 동서비스의 무역거래는 ‘보이지 않는 거래’(invisible transaction)이므로 국제간 비교우위 파악이 곤란할 뿐만아니라 관세의 부과등 수입제한 조치의 실행이 어렵다. 또한 거래자체가 서비스제공자와 구매자가 직접 연결되어 거래되므로 각종 불법거래 및 범행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더우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국제간의 자유유통은 국제경제구조를 결정지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전반과 국가주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군사 및 정치와 관련된 자국의 정보가 선진국으로 쉽게 이동됨으로써 개도국들의 전통적인 주권개념의 변질 및 국가안보상의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²⁾.

4. 한국의 정보통신제도의 현황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체신부가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시설 및 운영면에서 약간의 제도적 개편은 있어 왔지만 정부가 우편업무 및 정보통신업무의 모든 면을 독점적으로 관장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전기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전기통신시설이 크게 확장되고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수요가 급격히 상승하여 정부는 公衆通信業務에 대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우편업무와 전기통신업무를 분리하고 관리체계화를 통해 미래의 기간산업의 기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의 한국의 정보통신분야의 법체계와 관리체계 그리고 정보 통신제도를 정리 소개한다.

(1) 법체계

1980년 이전에 제정된 정보통신에 관한 법은 대체로 전기통신법(1961), 전파관리법(1961), 전기통신공사업법(1976)등 세가지 정도였다(특수정보통신업무에 관한 군용전기통신법(1961. 12. 30, 법률 제901호)은 논의에서 제외함).

먼저 전기통신법은 舊法令인 電信法, 朝鮮電信線電話線建設令 電信線電話線建設條例등을 흡수하여 公衆電氣通信 및 私設有線電氣通信의 관리 운영설비와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시의 정보통신에 관한 중요한 법적근거를 제공하였다. 그이외 보완적으로 전파자원 및 무선전기통신설비의 합리화사항을 규정한 전파관리법,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전기통신공사업의 관리를 규정한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정보통신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대규모적인 투자와 함께 정보통신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오면서 데이터 통신의 육성필요성의 대두,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 대한 대응, 공중통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한

2) 이 문제는 TDF(Transborder Data Flow : 정보통신서비스의 국제유통흐름)로 개념화되어 가고 있고 이것과 국가주권의 문제에 연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조임곤, TDF에 따른 국가주권문제, 통신정책동향, 1988, 가을 : 50-67.

서정희, 전기통신의 중요성과 미국의 개방요구, 통신개발연구원 working paper, 1989참조

국전기통신공사업(1981)이 제정되어 전기통신사업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관하고 체신부에게 이를 규제 및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과 정책기능이 분리되었다.

이에따라 기존의 전기통신법은 폐지(1983)되고 새로이 전기통신기본법(1983)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1983)으로 분리 개편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정보통신단체를 이용한 정보의 처리 및 정보검색업무를 민간기업에게 개방하고 전화기 등 단말기기의 자급제실시 공중통신망의 데이터통신개방, 형식승인제도의 도입 그룹전산망의 이용(1987)등 많은 자유화조치가 뒤따르게 되었다.

이외에도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해 통신정책개발을 위한 통신개발연구원법, 정보통신의 발전과 효율적인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유선망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유선방송관리법등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법령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表 4-1]은 현재의 한국의 정보통신에 관한 법령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은 80년대 막대한 설비투자를 통해 1987년 전화망선수가 1,000만망선을 돌파하여 어느 정도 기본통신서비스수요를 충족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다양

〔表 4-1〕 韓國의 情報通信法令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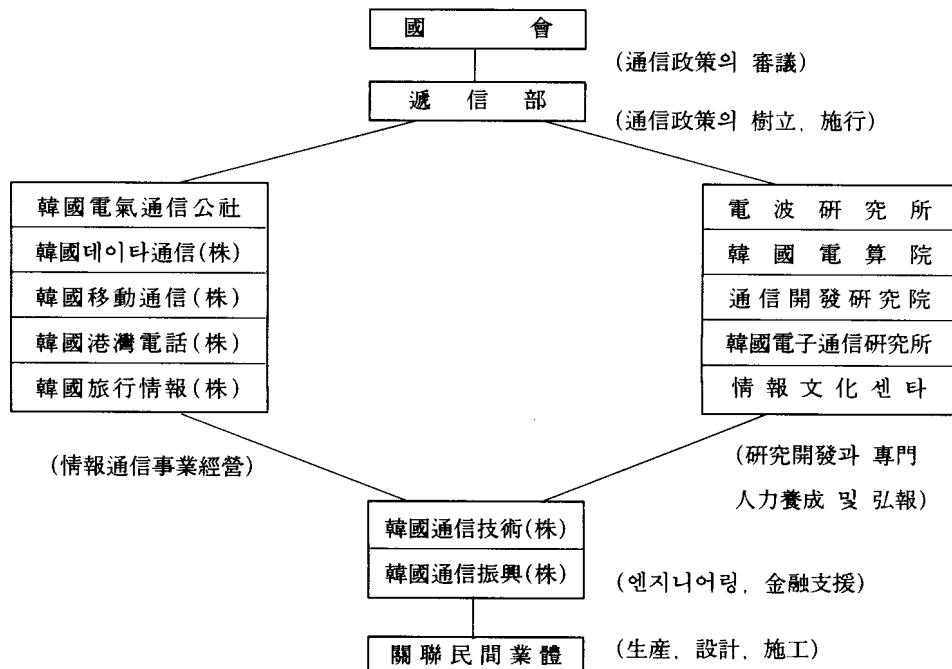
法制名	目的	制定日
電波管理法	電波를 合理的으로 管理함으로써 公共의 福祉를 增進함.	1961. 12. 30 (法律 제 924호)
電氣通信工事業法	電氣通信工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許可의 基準 및 通信技術士의 보유 등에 관한 事項을 規制하여 적정한 電信電話設備의 安全과 完全한 시공을 확보함.	1976. 4. 6 (法律 제 2893호)
韓國電氣通信公社法	韓國電氣通信公社를 設立하여 公衆電氣通信事業의 합리적이고 채임있는 經營體制를 確立하고 公衆電氣通信設備의 확충을 促進함.	1981. 3. 14 (法律 제 3685호)
公衆電氣通信事業法	公衆電氣通信事業의 원활한 발전과 이용자들의 便宜를 도모함.	1983. 12. 30 (法律 제 3685호)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電氣通信의 效率的管理를 기하고 그 발전을 促進함.	1983. 12. 30 (法律 제 3686호)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	電氣通信과 電子計算組織의 균형적인 발전과 效率的 이용을 促進시켜 情報化社會의 基盤造成과 高度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986. 5. 12 (法律 제 3848호)
有線放送管理法	有線放送의 合理的 管理를 통하여 전전한 事業發展과 利用效率化를 기함.	1986. 12. 31 (法律 제 3914호)
通信開發研究院法	國內外의 通信 및 通信關聯分野의 政策, 制度, 產業 등에 관한 각종 情報를 蒐集調查, 研究하고 이를 普及, 活用하게 함으로써 情報化社會의 구현을 위한 國家의 通信政策의樹立과 國民經濟向上에 이바지함.	1987. 11. 28 (法律 제 3952호)

*資料：大韓民國法令沿革集(遞信編)

화 및 고도화되어가는 통신서비스수요 및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법령체계의 정비가 요망된다.

(2) 정보통신의 관리체계

[圖 4-1] 韓國의 情報通信管理體系



한국의 정보통신관리체계안에는 [圖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결정기관인 체신부와 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데이터통신(주), 한국이동통신(주), 한국항만전화(주), 한국여행정보(주)가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및 홍보를 담당하는 체신부산하 전파연구소, 한국전산원, 통신개발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화센터 등이 있으며 엔지니어링과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한국통신기술(주) 한국통신진흥(주)등이 있다. 이밖에 통신설비를 생산 공급하고 이를 설계 시공하는 관련 민간업체로서 제조업체와 용역업체 및 통신공사업체가 있다.

(3) 한국의 정보통신제도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감독에 관한 모든 권한은 체신부에 귀속되어 있는데 체신부는 정보통신 행정외에 우정업무를 함께 취급하고 있다. 정보통신사업의 운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독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7조 1항)³⁾ 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영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1항

공중전기통신사업(이하 '공중통신사업'이라 한다)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를 경영한다.

과 새로운 공중통신역무의 신속한 육성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사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중통신사업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동법 7조 2항)⁴⁾. 현재 公衆電氣通信役務⁵⁾를 제공하는 공중통신사업자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表 4-2]와 같다.

〔表 4-2〕 公衆通信事業者의 概要

事 業 者	事 業 内 容	法 的 根 據	指定日字
韓國電氣 通信公社 (KTA)	· 國內 및 國際電氣通信 · 企業通信	· 電氣通信基本法 第 2 條** · 電氣通信基本法施行令 第 3 條 1 項 1***	1982. 1. 1
韓國데이타 通信(株)) (DACOM)	· 基本通信事業 · 附加價值通信事業 · 公共部門 電算網事業	· 電氣通信基本法 第3條 · 電氣通信基本法施行令 第 3 條 1 項 2	1982. 3. 18
韓國移動 通信(株)	· 車輛電話事業 · 無線呼出事業 · 移動通信에 관한 研究 및 技術의 開發 · 위와 關聯된 附帶事業	· 電氣通信基本法 第3條 · 電氣通信基本法施行令 第 3 條 2 項	1988. 4. 30
韓國港灣 電話(株)	· 港灣, 有·無線通信 · 港灣公衆電話 · 公衆電話交換網 接屬事業 · 위 각號事業과 關聯된 附帶事業	· 電氣通信基本法 第 3 條 · 電氣通信基本法施行令 第 3 條 2 項	1988. 1. 7
韓國施行 情報(株)	· 航空豫約에 관한 情報交換 시스템의 構築 · 旅行社의 航空券 共同 販賣시스템 開發 運營 · 有關 旅行情報시스템과의 接屬 시스템의 運營 · 電算端末機設置 및 貨貸	· 電氣通信基本法 第3條 · 電氣通信基本法施行令 第 3 條 2 項	1988. 2. 13

* 資料 : 電氣通信에 관한 年次報告書, 遞信部 1988

** 電氣通信基本法 第 3 條(電氣通信의 管掌) :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特別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 電氣通信基本法施行令 第 3 條(公衆通信事業者の 指定)

- 1) 체신부장관이 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의 임무를 경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 기관, (2) 정부 또는 공사가 자본금의 3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중통신사업을 주된 業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
- 2) 체신부장관은 공중전기통신 역무를 제공 받는자가 기술적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1항 각호의에 법인을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새로운 공중전기통신역무의 신속한 육성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공사외의 자를 지정하여 공중통신사업의 일부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5)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타인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함 :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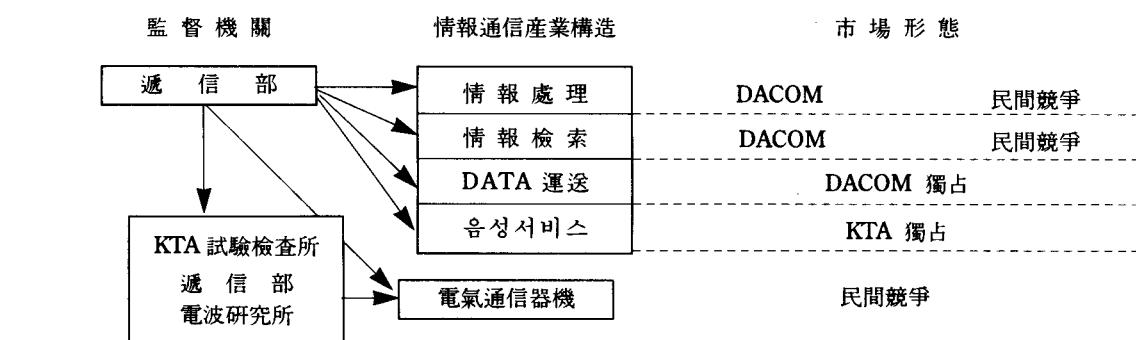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사업은 크게 정보전송, 정보검색, 정보처리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보 전송은 별도의 지정을 요하는 공중통신사업자만이 제공하도록 규제되어 있다. 그 중 음성서비스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KTA가 운영하고 있고, 데이터 전송은 1984년 9월 체신부장관에 의해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된 DACOM이 제공하고 있고, 특수한 영역의 정보통신은 한국이동통신, 한국항만전화, 한국여행정보 등이 맡고 있다. 또한 데이터 서비스 사업자 중에 정보의 처리 및 검색업무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정보통신 회선사용계약의 청약과 체신부장관의 승인하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3항)⁶⁾

이러한 정보통신사업의 분류체계는 법적독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제한적 경쟁을 허용하는 형태로서 제도적으로 명확한 사업의 구분은 하고 있지는 않다. 즉 아직까지는 기본통신서비스 수요의 충족이 우선적 목표이었고 이를 위해 공중통신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정보통신사업은 공중통신사업자의 고유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바뀜에 따라 고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기본원칙은 고수하는 상태에서 예외를 인정해가는 방법으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VAN서비스(부가가치서비스)⁷⁾ 및 고도서비스의 개념은 한국의 제도에서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민간사업자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은 공중전기통신사업단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선사용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즉 정보의 전송업무는 금지되고 시설망내에 접속되는 단말기기로 통제되고 있어 사업의 범위는 제한된다⁸⁾.

전기통신기기의 認證業務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KTA시험검사소 및 체신부의 전파연구소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 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기기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이상의 한국의 정보통신제도를 요약하면 다음 [圖 4-2]로 나타낼 수 있다.

(圖 4-2) 韓國의 情報通信制度



- 6)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3항 : 공사는 제1항의 청약에 대하여 전부를 승인할 수 없을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7) VAN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통신회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구성한 네트워크에 컴퓨터와 통신장비등의 설비를 설치하여 정보의 형식 및 내용에 부가가치를 첨가하여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로 정의된다.
- 8) 좀더 자세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2조 참조

이러한 제도하의 한국 정보통신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表 4-3]에서 보듯이 선진국과 비해서 한국은 전신 전화등 기본서비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분야에서도 절대액측면에서 보면 美·日의 10%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계속적인 망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우기 부가가치서비스인 정보통신부문은 아직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정보화를 진행시키면서 기업비밀유지, 통신망의 신뢰성, 요금절약등의 이유로 특정통신회선을 선호하기 때문에 [表 4-4]에서 보듯이 연평균 50%이상의 성장율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表 4-3〕 각국의 통신시장의 규모 및 구성비

	전신 전화등	특정통 신회선	패켓 교환	DB	RCS	제3자 DP	기타	S/W	연도
한국	259823 (92%)	4,625 (1.6%)	634 (0.2%)	1,265 (0.4%)	*	5,429 (1.9%)	*	10,770 (3.8%)	88년 천만원
일본	461673 (60.9)	69,741 (9.2%)	3,400 (0.4%)	4,320 (0.6%)	28,220 (3.8%)	41,850 (5.5%)	37,360 (4.9%)	110450 (14.6)	87년 천만엔
미국	10,226 (59.7)	1,209 (7.17)	65 (0.4%)	467 (2.7%)	*	1,810 (10.6)	1,173 (6.8%)	2,184 (12.7)	87년 천만불

- 주) 1. * : 한국과 미국은 구분하고 있지않고 있음
 2. 기타에는 자문업, 위탁경영, 데이터 입력 등이 포함함
 3. RCS(Remote Computing Service) : 원격컴퓨터서비스
 4. S/W : 소프트웨어
 5. 성극제(1990), 대외개방과 정보통신산업발전, P16인용

〔表 4-4〕 특정통신회선의 가입회선 증가율

	1985	1986	1987	1988
가입 회선수 (증가율)	14,486	18,222(25.8%)	23,951(31.5%)	38,930(62.5%)

5. 자유화에 따른 주요국의 정보통신제도

컴퓨터와 전기통신이 결합 발전되어 감에 따라 통신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산업은 경제구조의 소프트화에 따른 미래 전략산업이라는 점에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뿐아니라 산업전체의 정보화 효율화를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함과 동시에 하드웨어의 수요유발을 촉진시켜 컴퓨터 및 정보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미 정보통신의 자유화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정보통신사업자들은 해외시장에서의 사업전개를 위한 체제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유럽 및 아시아시장에서 선점을 확보하기 위해 주

력하고 있으며 유럽제국에서는 미국 및 일본의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이에 대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화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쟁의 진전에 따라 공정성 및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취해진 여러 보완조치들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독점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유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자유화정책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그리고 자유화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프랑스와 서독의 정보통신제도를 비교분석 한다.

(1) 미국

전기통신 도입초기에 있었던 경쟁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가 정부독점에 의해 전기통신의 발전을 도모해 온 것과는 달리 미국은 민간에 의한 전기통신의 운영 및 규제라는 독특한 체제하에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정보통신자유화도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같이 정부의 불연속적인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이에 대응한 정부의 규제기관의 조치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미국의 정보통신에 대한 규제에는 많은 정부기관이 관여하고 있다. 즉 입법 사법 행정을 관장하는 여러 기관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관한 관할권도 聯邦政府와 州政府로 나뉘어져 있는데 州間通信과 國際通信에 관한 규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담당하고 州內通信은 각 주의 공익사업위원회(PUC :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다.

규제장치를 보면 입법부는 FCC의 규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법률의 제정 및 예산의 편성등을 통해서 사법부는 FCC의 결정을 통신법 및 독점금지법에 기초하여 동분야의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해당부처에서 담당한다. 즉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의 통신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로서 국무성이 미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상무성의 정보통신청(NTIA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전기통신정책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하며 법무부는 독점금지법에 의해 동산업을 감독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은 정보통신산업의 정책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구조가 권한의 분산에 의한 상호견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현재 정보통신산업의 기본규제의 골격은 1980년 FCC의 제2차 컴퓨터조사 결정과 1982년 재판소의 수정동의판결(Modified Final Judgment : MFJ)이다. 즉 제2차 컴퓨터조사의 결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가 규제하의 기본서비스와 자유경쟁의 고도서비스로 분리되고 미국전신전화사(AT&T)의 분할을 결정한 MFJ에 의해 기본서비스도 자연독점을 보장한 시내망서비스와 경쟁을 허용한 장거리망서비스로 구분되었다. 이에 대해 시내전화는 각 州政府의 엄격한 규제하에서 BOCs(Bell Operating Company) 및 1,500여 독립계 전화회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며 장거리전화 및 고도서비스는 경쟁체제하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서비스분야에서 경쟁의 효율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BOCs 및 AT&T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MFJ에 의해 BOCs는 시내전화서비스, 전화번호부, 경쟁서비스사업자의 접속 및 기기판매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었고 AT&T는 FCC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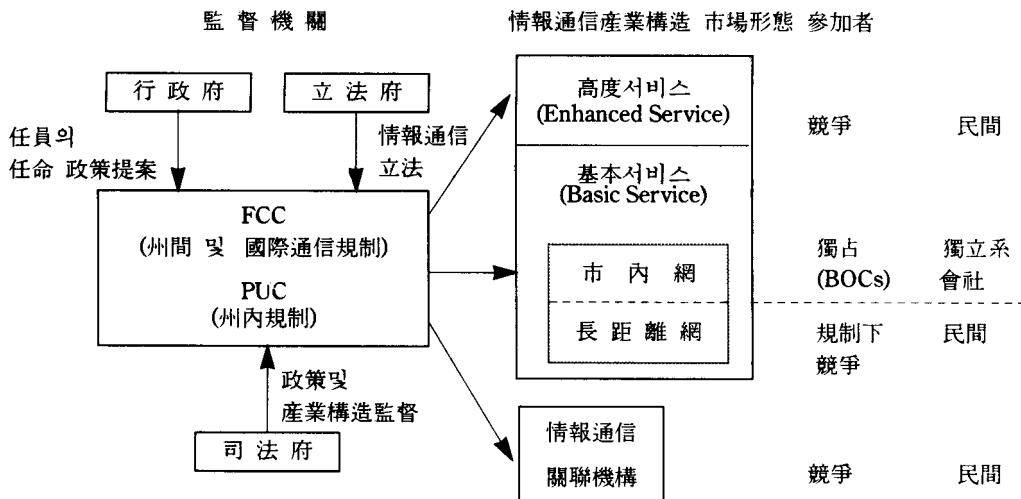
의해 요금규제 및 非構造的 保證裝置(Nonstructural Safeguards : 정보의 공개 및 공정한 접속 자회 사와의 회계분리 등을 규정)등의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국제통신서비스분야도 경쟁체제로 운영되고 더우기 1984년에는 국제통신설비의 독점체제를 거부하고 商用衛星의 자유화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국제통신질서를 둘러싸고 각국과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情報通信關聯器機市場은 1976년 FCC의 등록제도에 따라 민간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FCC규칙의 절차에 승인을 받은 器機는 자유로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정보통신제도를 요약하면 [圖 5-1]과 같다.

[圖 5-1] 美國의 情報通信制度



FCC의 2차 컴퓨터 조사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가 기본서비스 및 고도서비스로 분류됨으로써 서비스의 구분은 명확해진 듯하다. 그러나 통신망자체가 극도로 인텔리전트화되어 많은 고도서비스가 기본통신망에 의해 제공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비용과 편익이라는 면에서 업무영역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즉 일부 고도서비스를 기본서비스에 포함시키게 되면 전국적 기본통신망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사회적 효율이 증대되는 반면 경쟁사업자의 사업기반을 잠식하여 시장경쟁력의 증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CC는 1986년부터 제3차 컴퓨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패켓 교환서비스 프로토콜처리 음성메시지서비스 등과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개별적서비스의 구분방법과 AT&T와 BOCs에게 고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면서 여타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1988년 MFJ의 일부수정에 의해 이전에 BOCs 및 AT&T에는 금지되어 있던 정보제공서비스 중에서 정보내용을 제외한 정보전송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였다.

미국의 정보통신은 정보통신사업이 개시된 이래 오늘날까지 복수의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정책에 의해 정보통신사업자는 전신사업자 전화사업자 특수통신사업자 고도서비스 사업자 위성통신사업자 재판매통신사업자 등 여러 사업자로 다양화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신사업자간의 겹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업자 분류의 의미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사업자수도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정보통신시장에서 큰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로 AT&T, 地域株式會社(RHC : Regional Holding Companies), BOCs, MCI(Microwave Communications Inc.)등이 들 수 있다.

미국의 정보통신자유화는 전기통신이 도입된 이후 100여년에 걸친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규제제도 자체도 미국의 정치변화에 따라 민간의 압력에 의해 여전히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확립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어떤 제도의 성립은 곧 새로운 갈등을 불러 일으켜 변화에의 압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도 자유화과정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정보통신제도의 발전과정은 곧 정보통신규제완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 스스로가 채택한 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정보통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2) 일본

정보통신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일본은 우선 공사체제로 있던 NTT(일본전신전화공사)를 민영화시키고 이제까지 NTT와 KDD(국제전신전화)의 독점을 인정해왔던 법률을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과정에서는 미국의 직접 간접의 압력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제정된 일종의 전기통신사업법(1985. 4)과 NTT법은 정보통신사업의 효율성제고와 합리화를 위하여 전기통신망부분에의 부분적인 경쟁체제도입과 전기통신서비스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금후 일본이 실현해야 할 고도정보화사회의 제도적 기반의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같은 신제도는 그 사업구분 및 이에따라 필요한 최소화의 사업규제를 통해 정보통신사업의 독점체제를 철폐하고 이 사업을 민간에 전면적으로 개방한 것에 그 특징이 있다.

[表 5-1]은 이러한 일본의 신제도를 요약하고 있는데 표에서 정의된 것처럼 일본의 정보통신산업은 통신망소유의 유무에 따라 사업자별 구분을 하는 독특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 즉 정보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의 보유에 의한 서비스제공업자인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와 통신망의 임차에 의한 사업자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되고 제2종 전기통신사업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를 특별 제2종으로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사업자별로 서비스제공의 범위는 한정되지 않고 모든 서비스분야의 경쟁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 및 네트워크사업자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공성의 확보를 위하여 [表 5-1]에서와 같이 사업자별로 차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제1종 사업자에 대해서 우정성은 요금규제를 하며 내부상호보조방지를 위해 사업별 회계정리의무를 적용시키고 수급조정원칙에 따라 참여

(表 5-1) 日本의 新制度의 概要

區 分	第 1 種 電 氣 通 信 事 業	第 2 種 電 氣 通 信 事 業	
		特 別 第 2 種	一 般 第 2 種
定 義	自體의으로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여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電氣通信設備를 不特定多數의 通信用으로 제공하는 第2種 電氣 通信事業으로써 設備規模가 120bps 환산으로 500回線을 넘는것 · 日本이외의 場所와의 通信을 위한 電氣通信設備를 他人 通信用으로 제공하는 第 2 種 電氣通信事業 	特別第 2 種 電氣通信 以外의 電氣 通信事業
法 律	參與形態	郵政省許可	登録
	提供義務	領域區域內 提供義務	없음
	서비스의範圍	制限 없음(電話, 專用VAN, 데이터通信 등)	制限 없음(不特定多數 또는 國際서비스)
	料金등의提供條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郵政省許可 · 認可基準은 法律로 정함 · 約款의 揭示義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郵政省申告 · 約款의 揭示義務
上 的規定	設備 및 品質등의 技術條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郵政省이 정함 · 記述水準適合義務 · 主任技術者配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記述水準適合義務 · 主任技術者配置
	參與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需給調整 · 經理的基礎 · 技術的能力 · 外資制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理的基礎 · 需給調整 및 外資制限 事項 없음
	相互接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 1 種事業者間 相互接屬 協定은 郵政省 許可 · 特別第2種事業者와 接屬은 許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別第2種事業者間 國際部門 接屬은 郵政省 認可 · 國內部門接屬은 申告
	其 他	業務改善命令	業務改善命令

*資料：遞信部, 電氣通信에 관한 年次報告書, 1988.

를 제한하며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율을 1/3이하로 제한하는 등 정부의 시장통제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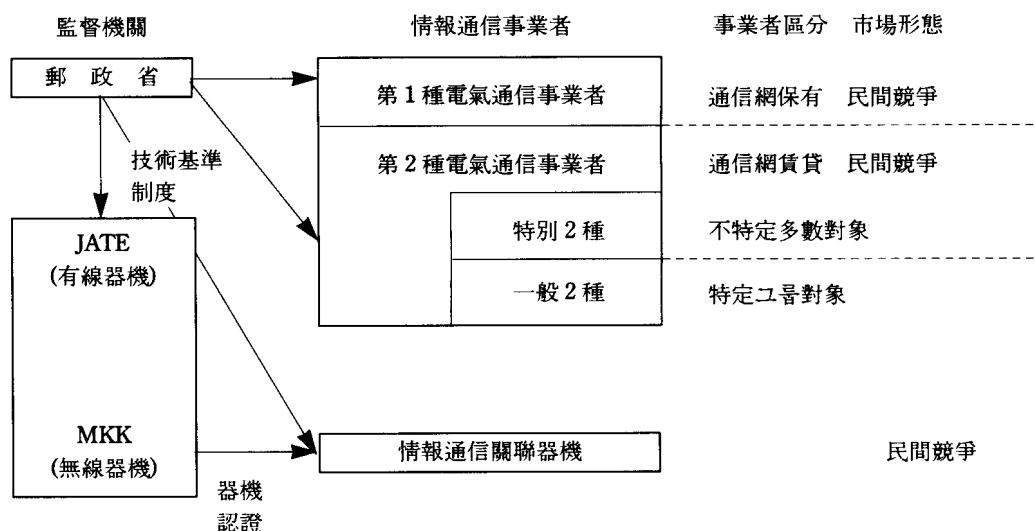
일본 정보통신에 관한 일본의 중앙행정기구는 우정성(MPT)이다. 즉 우정성이 정보통신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정보통신행정외에 우정업무를 함께 취급하고 있다. 器機認證制度는 미국의 비관세장벽의 완전 철폐라는 강력한 항의에 따라 우정성이 지정한 민간승인기구에 맡겨지고 있는데 유선 및 무선기기에 따라 전기통신단말기 심사위원회(JATE : Japan Approval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및 무선장비기술인증협회(MKK)라는 독립승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들은 우정성에 제정한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통신기기의 표준화 및 인증과정을 간략히 하고 객관성있는 표준화 설정 및 인증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이들의 인증을 받은 기기는 자유로이 통신망에 접속될 수 있어 단말기기시장은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1952년 NTT와 KDD가 전기통신청에서 공사로 분리된 후 일본의 정보통신산업은 전기통신이 기간산업으로서 공공성 규모의 경제 및 기술의 통일성의 중요성을 이유로 계속 독점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급속한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기통신기술의 발전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부적인 자유화요구와 병행하여 미국의 전기통신서비스 시장개방 및 형식승인 인증제도의 완화를 포함하는 전기통신장비시장의 강력한 개방요구에 따라 일본의 정보통신시장은 완전 개방되었다.

이상의 일본의 정보통신제도를 요약하면 [圖 5-2]로 나타낼 수 있다.

[圖 5-2] 日本의 情報通信制度



(3) 영 국

영국의 전기통신개혁논의는 1977년 카터위원회 보고에서 시작하여 79년 대처수상의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적인 제안이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기통신의 자유화를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기통신의 개혁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단계는 1981년의 영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것이고 제2단계는 1984년의 전기통신법에 의한 개혁이다. 이 두 법은 영국의 정보통신분야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특히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영국의 정보통신을 둘러싼 관련기관들의 기본체제가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었다. 먼저 무역산업부 (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영국정보통신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전기통신청 (OFTEL : Office of Telecommunications)의장을 임명하며 법안작성 및 면허부의 전반적인 정보통신

정책을 시행할 임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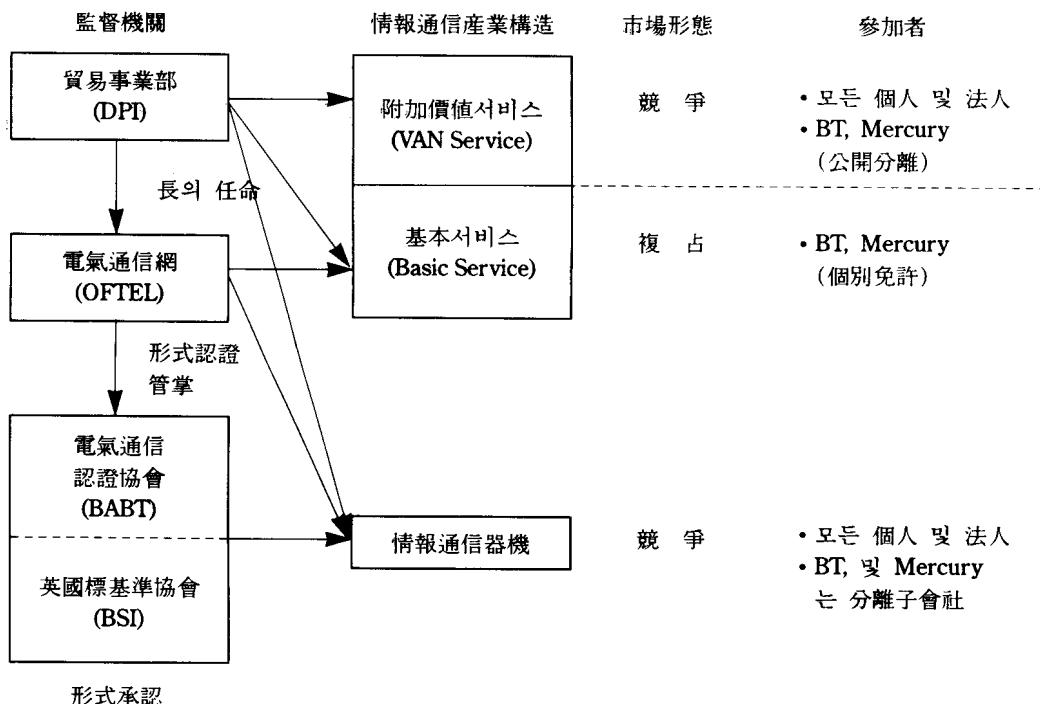
전기통신청은 정보통신분야를 감시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면허부여와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면허부여와 면허조건 준수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이 기구의 특징은 행정기관이지만 어떠한 정부부처에도 속하지 않고 다만 의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실질적인 산업의 규제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밖에 영국표준협회(BSI : British Standard Institution)는 영국전기통신에 관련된 기술수준을 제정하며 이러한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영국전기통신인증협회(BABT : British Approvals Board for Telecommunications)는 기기인증을 실시한다. 또한 BABT의 형식인증결과에 의거하여 OFTEL은 단말기기인증업무를 실시한다.

정보통신서비스업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본서비스 및 VAN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DTI 또는 OFTEL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 공중전기통신사업자는 개별면허를, VAN사업자는 일반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정부는 면허권을 이용하여 기본서비스사업의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즉 기본서비스부문에서 BT(British Telecom)와 Mercury양사에만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통신망사업의 독점체제를 갖추고 있다.

부가가치서비스는 DTI의 “VAN서비스에 관한 일반면허안”에 따라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고 있으며 BT 및 Mercury의 公衆網에 의한 VAN서비스사업도 가능하다. 다만 BT 및 Mercury에 대한 면

(圖 5-3) 英國의 情報通信制度



허조건에서 專用線의 單純再販賣는 1989년 7월까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서비스의 정의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端末機市場은 1981년 BT법 실시 이후 경쟁이 도입됨으로써 현재에는 공중전화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민간업자의 경쟁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圖 5-3]과 같다.

영국의 정보통신자유화는 정부의 면허권에 의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즉 통신망사업은 BT 및 Mercury에 의한 독점체제로 되어 있고 VAN사업은 단순재판매금지 같은 제한적 자유화는 시한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동향 및 경쟁의 진전에 따라 제한적 규정은 재검토되고 완화되어갈 것이다.

(4)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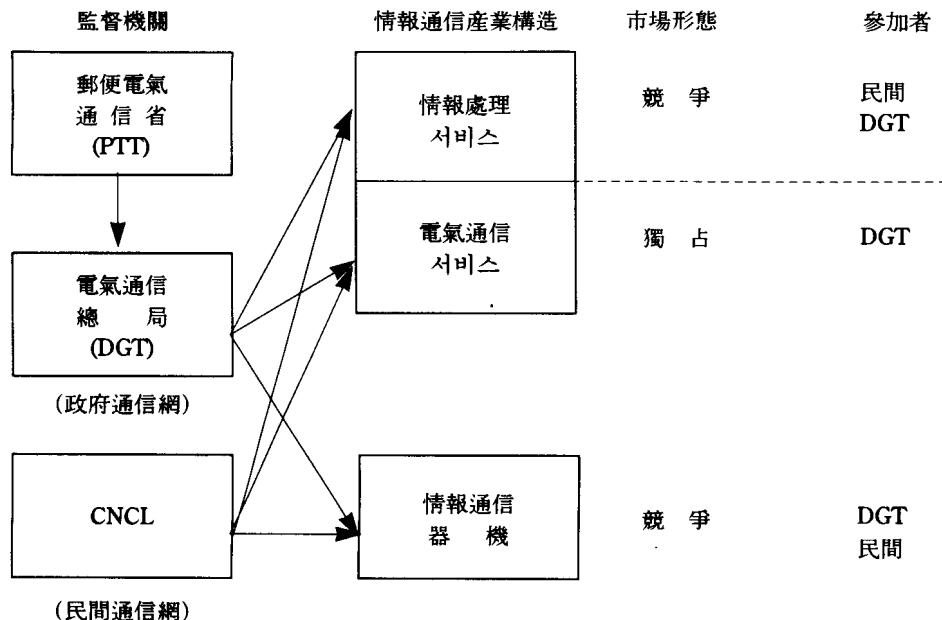
정부에 의한 主要基幹產業은 운영을 중시해온 프랑스에 있어서 정보통신은 정부독점체제하에서 운영되어 왔다. 즉 우편전기통신성(PTT)은 인가를 통해서만 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통신망서비스사업을 독점화시켰었다.

PTT산하에 있는 전기통신총국(DGT)은 산하 子會社를 통해 국내통신서비스, 국제통신서비스의 독점적 제공과 민간업자와의 경쟁하에서 통신기기를 공급해 오는 한편 정보통신산업의 정책 및 산업의 감독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1986년 9월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간통신망의 규제권한을 통신자유를 위한 국가위원회(CNCL)에 이관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이 제정된 '전기통신경쟁법안'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통신망 및 민간통신망에 따라 DGT 및 CNCL에 의한 2원적 규제체제를 지니게 된다.

통신망서비스사업이 DGT의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의 정보처리서비스는 1982년 '시청각통신법'에 의거하여 민간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들 민간업자들은 DGT의 공중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메일 데이터처리 데이터베이스사업을 행하고 있다. 또한 1987년 11월에 DGT의 독점사업인 아날로그방식의 셀룰러자동차 전화를 민간에게 개방하였고 통신회선 이용에 있어서는 내부이용을 위한 전용선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상호접속 공동사용 및 재판매는 제한되고 있다. 프랑스는 정보통신서비스업을 전기통신서비스와 정보처리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제도를 정리하면 다음 [圖 5-4]와 같다.

1986년 3월 시라크내각의 등장에 따라 주요기간산업의 민간경쟁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프랑스의 정보통신자유화는 급속히 추진되어 오고 있다. 시라크내각에 의해 제안된 통신자유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면서 정보통신의 운영과 감독권이 분리되고 새로운 규제기관인 CNCL이 설립되었다. CNCL은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한 독립규제기관으로 민간방송국의 허가 및 주파수 할당, 민간전기통신설비의 건설 및 운영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국영방송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전환은 여전히 PTT가 지니게 된다. 현재 통신망이 DGT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CNCL의 규제전환은 제한되지만 이 법안의 규정에 의해 프랑스 정보통신자유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자유화 방향을 결정한 새로운 법안이 PTT주관하의 특별위원회

(圖 5-4) 프랑스의 情報通信制度



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데 19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의 모델을 도입하여 사업내용의 구분을 제1종사업체는 전기통신설비의 소유에 의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인가에 의해서만 설립되고 제2종사업자는 설비의 임차에 의한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신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의 규제권한은 CNCL에 완전히 위임시켜 제1종 및 제2종 사업자에 대한 인가 및 신고 처리를 관장하여 산업전반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PTT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5) 서 득⁹⁾

서독의 정보통신에 관한 규제 및 감독은 1949년에 제정된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에 따라 채신부 (DBP : Deutsche Bundespost)에서 담당한다.

동 헌법에 의하면 우편 전기통신에 관한 법률의 제정권한은 배타적으로 연방에 귀속되며 연방은 독자적인 연방행정기구를 통하여 법률을 집행하고 DBT는 이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DBT는 연방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 및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정책 운영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예산 요금결정 및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등과 같은 주요한 사업운영정책은 경영자문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위원회는 국회의원 노동조합 및 산업계의 대표, 통신 및 재정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배경으로 한 서독의 정보통신시장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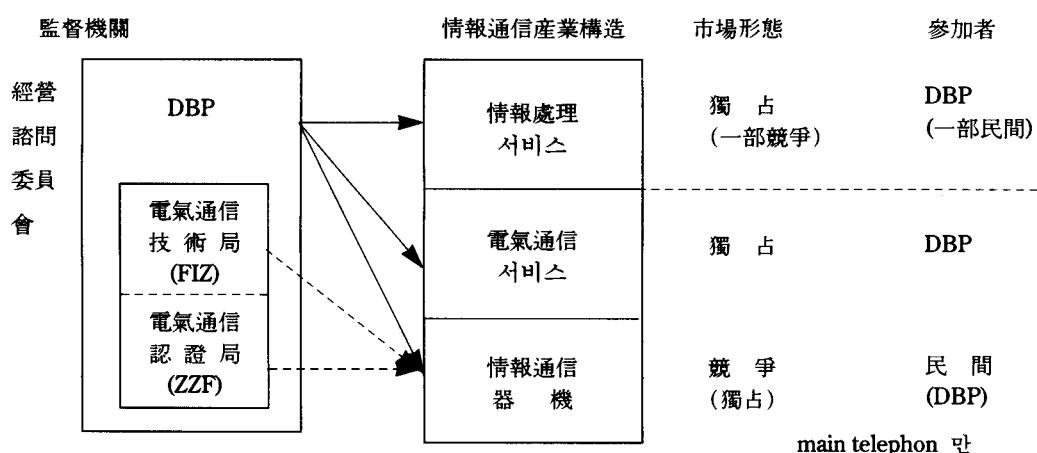
9) 여기서는 80년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전의 독일을 대상으로 하였음.

그래서 경쟁도입과 같은 기본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요사업운영정책의 변경에도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복잡하게 얹혀 있어 급진적인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

정보통신서비스사업이 헌법에 의해 DBP의 독점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정보검색 및 처리서비스는 민간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들은 DBP의 공중통신망에 자신의 단말기를 연결하여 정보의 제공 및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700여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단일의 공중통신망에 의한 서비스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선사용에는 엄격한 제한이 뒤따르고 사설통신망의 설치는 DBP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설망과 공중망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는 DBP가 관여하지 않고 경쟁체제하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본전화기(main telephone)만 DBP의 독점공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중망에 접속되는 정보통신기기는 DBP의 전기통신기술국(FIZ)이 제정한 표준에 의거하여 DBP직할의 전기통신인증국(ZZF)에서 형식승인을 실시한다. 이상 서독의 정보통신제도를 요약하면 다음 [圖 5-5]와 같다.

[圖 5-5] 西獨의 情報通信制度



헌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정부독점을 규정하고 있는 서독도 서독경제의 발전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산업의 육성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985년 정부전기통신위원회(GCT)를 설치하였으며 1987년 동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2년간에 걸쳐 검토된 동위원회의 제안사항을 1988. 3월 연방 체신부 조직개혁법의 준비안으로 작성하여 각의에 제출하였으며 1989년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령화되어 그동안 정보통신의 독점체제를 고수하여온 서독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동법안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현저한 기술발전에 따라 기존제도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쟁원리의 도입, 감독주체와 사업운영주체의 분리 DBP를 3개부문(우편국, 우편금융국, 전기통신국)으로 분리시켜 상대적 자립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

고 있다.

또한 동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망의 독점은 계속 유지한다. 단 위성통신을 이용한 저속의 데이터 전송 일부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인정한다.
- 감독과 운영주체를 분리한다. DBP는 정보통신사업상의 감독을 행하며 사업운영의 책임은 3개의 公企業을 설립하여 분리함으로써 DBP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상의 자유를 확대한다.
- 음성서비스를 제외한 전 서비스를 개방한다.
- 독점사업체는 전기통신설비제조분야에는 진출하지 못하며 연방납부금 의무를 폐지,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를 지니게 된다.
- 단말기기시장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인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전기통신국은 자신의 경영판단에 입각하여 여기에 참가할 수 있고 器機의 가격도 DBP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器機形式承認의 객관적인 기준마련에 노력한다.

6. 미국의 정보통신시장에 대한 개방압력

(1) 미국의 정보통신분야 통상정책

앞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요선진국에서의 정보통신부문은 과거 통신망 자연독점론에 근거한 독점적 경영형태로부터 급속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산업부문들의 체제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부문의 체제개편은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자유화라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정보통신부문의 자유화정책을 국제경쟁력확보측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검토하고 있어 국가간 시장개방이 중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신한 미국은 자유경쟁의 국제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즉 자유화 단계를 거친 미국은 자국의 시장이 이미 개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타 국가의 자유화와 개방을 공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970년 후반의 세계경제 침체에 의해서 더 옥심화된 재정적자 및 국제수지 적자등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통상정책의 일환이다. 미국의 기본적인 통상정책의 기조는 비교우위를 잃은 사양산업분야에서는 국내산업 및 노동자를 불공정한 수입상품으로부터 보호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첨단산업이나 농수산물분야에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 개별품목의 수입규제
2. 무역상대국에 개별품목시장개방요구
3. 환율 등 매크로 경제변수 조정압력
4. 보복을 전제로 한 시장개방압력
5.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그리고 이러한 개방압력을 좀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통상법의 강화 및 제도적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전기통신무역법안(약칭) - 하원포괄무역법안(The Omnibus trade & Competitiveness Act)중에 포함된 독립법안 - 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미국이 정보통신분야에 두는 비중을 시사하고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을 정리하면 [表 6-1]과 같다.

[表 6-1] 電氣通信貿易法案의 目的

第1次目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國government가 所有 또는 管理하는 通信事業體에 의한 通信器機 및 services 差別的 調達의 廉止 · 外國 通信網 接屬要件 및 當該國 販賣端末器 登錄要件의 명확한 規程 · 外國의 電氣通信器機 標準設定過程의 透明性과 參加確保 · 端末器機의 形式承認 및 美國과 相對國家와의 形式承認相互認定 · 美國企業의 外國通信網에의 無差別 接屬에 의한 附加價值 提供條件 確保 · 위 事項의 統制 및 效率的 紛爭solution 규정의 마련
第2次目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의 通信器機 및 서비스에 대한 內國民待遇의 確保 · 美國의 通信器機 및 서비스에 대한 最惠國待遇의 確保 · 通信機器 및 서비스의 無差別 調達政策 및 이들은 政策調達 物資 規程에 포함 · 通信器機에 대한 關稅 減少 및 除去 · 補助金, 덤핑 및 知的所有權 侵害의 排除와 그의 電氣通信器機 및 서비스의 國際貿易을 왜곡시키는 不公正貿易慣行의 撤廢 · 외국인의 通信器機 및 서비스事業에 대한 投資障壁의 撤廢

* 황성진, 電氣通信과 美國의 對外政策, 通信政策動向, 1988, 봄

그리고 만약 이와같은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선협상국(PFC)으로 지정되고 12개월 안에 문제 가 해결되지 않으면 슈퍼 301조에 의해 보복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은 하락된 경쟁력을 회복시키려고 국내적으로는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 선두국가로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에의 집중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대외적으로는 공격적인 무역입법에 의해 자국시장보호와 외국시장의 철저한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크게 GATT중심의 多國間協商方式과 相互主義에 입각한 쌍무협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다국간 협상을 보면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부문은 정부 조달물자에 포함되는데 이 조달방식에서부터 논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Kennedy Round(제 6차 다국간 무역협상)에서 통신기기관련기술에 관련된 기술수준 등의 비관세장벽의 논의를 거쳐 Uruguay Round(제 8차 다국간 무역협상)에서 정보통신부문의 교역자유화실현을 위한 서비스협상그룹(GNS)의 성립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다국간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개별쌍무협상을 통해 시장개방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對美 黑字國인 일본 EC 신홍공업국(NICs)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일본과 EC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한국의 경우를 정리한다.

(1) 일본의 사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정보통신시장 개방협상은 편의상 크게 보아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전기통신기기시장의 개방협상이고 2단계는 정보통신시장 개방협상이며 3단계는 전기통신단말기 기 규격기준협상이다. 이런 구분은 시간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협상내용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MOSS(Market Oriented Sector Selective : 시장지향분야선택)협의는 3단계 와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A. 통신기기시장의 개방

1973년 동경라운드 당시 미국은 전기통신기기시장의 개방을 위하여 정부조달물자의 내외무차별 및 조달절차 공개에 대한 협상을 주도하였으나 제4차 중동전쟁과 제1차 석유파동등으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1978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주요 선진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게 되자 교역상대국 중 일본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전기통신기기시장개방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미국이 일본을 선정한 것은 유럽에는 이미 미국계 자회사가 많이 진출하여 있고 일본의 내수시장이 크며 또한 일본과의 무역수지가 불균형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통신기기시장 개방요구는 일본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NTT와 그 노조의 반대가 매우 강경하여 협상도중 NTT총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공식협상은 1979년 12월 일본의 통신기기시장개방에 완전합의하였다.

그렇지만 개방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한 시장개방이 아니라 NTT가 제안한 Track I, II, III라는 새로운 조달방식에 의한 시장개방이었다. 그런데 Track III은 신기술개발에 관한 것으로 NTT가 기존의 업자와 계속 계약할 수 있는 품목들로 NTT가 이미 일본기업들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 국기업의 진출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부록 : NTT의 신자재 조달방식 (Track I, II, III) 참조)

B. 정보통신시장의 개방

정보통신기기시장이 전격적으로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일수출은 예상만큼 증대되지 못하였고 흑자를 보여 오던 미국의 통신기기무역이 83년부터는 계속 적자로 돌아서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의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당시의 개방요구는 쇠고기 오렌지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품목의 시장개방요구와 함께 이루 어진 것으로서 83년 11월 나카소네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의 시장개방 약속은 이행시키고자 한 것이다.

개방요구품목 중 부가가치통신망사업(VAN사업)을 미국이 제일 관심을 보인 분야였다. 일본은 미국의 시장개방요구에 응하여 우정성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NTT를 민영화하는 등 의 법안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개정법안의 내용중에는 외국의 경쟁력있는 VAN사업자를 경계하기 위 한 외자 제한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보복 등을 이유로 개방에 찬성하여 외자 제한조항을 법안에서 삭제하고 정보통신부문도 개방하였다.

C. 전기통신단말기기 규격기준의 완화

일본의 입법과정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개입은 외자제한조항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즉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NTT가 민영화됨에 따라 과거 NTT가 담당했던 전기통신단말기기에 대한 규격기준심의가 우정성으로 귀속되게 되자 그 규격기준심의기구와 구성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우정성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고 시행령이 확정되고나서 논의할 문제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1984년 3월 그러한 심의기구를 설립시켜 놓았었다. 이러한 사실이 미국측 변호사에 의해 밝혀지자 미국은 대일보복을 결의하는 등 강경자세로 선회하게 되었다. 그러자 일본은 미국과 비밀협상을 통해 심의기구에 외국인도 참가시키고 일본의 전기통신 단말기기 규격기준을 미국식으로 완화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전기통신단말기기시장도 개방하였다.

D. MOSS협상

미일 시장개방협상의 3단계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85년 1월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갖고 전기통신기기, 전자,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그리고 임산물에 대한 4개 분야의 시장개방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의해서 1985년 1월부터 시작된 美日貿易協商을 MOSS협상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미일 차관급이 의장이 되어 각 개별분야의 시장접근조치에 착안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3단계는 이러한 MOSS협상 중 초기의 전기 통신분야 협상에 해당된다.

이렇듯 1985년이후 미국과 일본의 정부간에 있어 선별적인 분야별 시장개방협상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기존 GATT에 있어서의 일괄 협상방식과는 달리 개별협상 대상별로 시장참여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협상해가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 스스로가 아직은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하여 그 품목의 교역에 있어 장애가 되는 모든 교역상대국의 행위, 법률, 시장관행등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비교우위를 지키고 대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개별 접근방법의 전략이다. 또한 MOSS방식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통상법 301조의 발동등 대외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압적인 시장개방압력보다 원만한 접근방식으로 짧은 시간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와같이 미국은 시장개방을 위해서는 多國間協商이든 雙務協商이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일본이 시장개방 대상국으로 선정된 것은 對美貿易黑字가 가장 큰 요인이고 對美協商에서 일본이 가장 염려한 것은 자동차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분야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할 한국에게 미일 무역협상과정은 몇가지 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개방협상결과를 놓고 볼 때 미국은 원칙적인 면에서 그리고 일본은 실질적인 면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통신기기시장의 개방, NTT민영화, 정보통신시장개방, 전기통신단말기기의 규격기준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 등 많은 면에서 비록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일본의 시장을 결국 개방시켰다. 그리고 일본은 그러한 시장의 개방에도 정보통신시장을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정보통신시장의 개방협상이었음에도 통산성의 자유화정책과 정치인들의 압력으로 주무부처이며 전문기관인 우정성의 견해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 까다롭고 이해하기 힘든 수속 등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단기적인 효과를 얻

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EC의 사례

EC에 대한 미국의 정보통신시장개방압력은 일본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정보통신부문의 대외거래수지가 대일본의 경우에는 적자인 반면 대EC의 경우에는 흑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EC시장개방압력에 있어서는 주로 정보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접근상태파악(Market Access Fact Finding Talks : MAFF)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MAFF협상방식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취한 MOSS협상과 마찬가지로 개별국에 대한 쌍무협상으로서 미국내 정보통신시장개방과 관련된 상호주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EC에 대한 MAFF협상방식은 주로 심각한 시장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서독, 이탈리아, 프랑스의 3개 주요 EC회원국과 MAFF협상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페인과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시장참여와 관련된 정보통신정책 문제에 관한 비공식적인 쌍무회담이 1987년 중에 이루어졌으며 기타 EC가입국에 대해서도 GATT에서 협의된 내용의 준수를 요구하며 비공식적인 쌍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EC의 정보통신시장 참여에 대해 다음 6가지 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

- (1) 정부조달에 있어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경쟁의 결여
- (2) 부가가치서비스업의 공개경쟁시장
- (3) 부가가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관세율
- (4) 공중망보호라는 명목하의 까다로운 표준
- (5) 전기통신규제조항 제정의 투명성(transparency) 결여
- (6) 시험, 품질확인, 기기접속에 대한 제한적 절차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방식에 의한 협상이 부진하자 1988. 2월 EC를 정보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4) 한국의 사례

1989년 2월 美貿易代表部(USTR)는 한국과 EC를 정보통신부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식 지명함으로써 한미간의 정보통신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30일 이내에 미국측이 조사한 불공정사례를 중심으로 재협상을 해야하며 1년이내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으면 미국은 한국의 통신기기수출 제한 및 슈퍼 301조에 의해 미국 통신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수출액만큼 다른 한국상품의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우선협상국 대상지정 이전에 공식적으로 정보통신시장 개방요구를 해왔는데 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表 6-2]와 같다.

1989년 2월초 몇차례 한국정부와 비공식문서(Non-paper)형태로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 11개 항목의 약속사항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表 6-3]과 같은데 미국의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향후 한미간의 협상과정에서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 6-2〕 韓美間 情報通信分野 市場開放要求 日誌

일 시	요 구 사 항
'83. 4. 16.	USTR, 小刑 컴퓨터, 農產物輸入自由化 要求
10. 18.	美業界, 韓國產 컴퓨터, 輸入規制 促求
'86. 8. 11.	美: 서비스(情報通信 포함), 農產物 開放要求
'87. 3. 9.	美: 컴퓨터 市場開放要求
4. 2.	美: 通信分野 市場開放要求
4. 20.	美: 컴퓨터 早期開放促求
'89. 1. 25.	美: 韓·日 EC를 通信分野 優先協商對象國 選定
2. 21.	美: 韓·EC 通信分野 優先協商對象國指定
2. 26.	美: 韓國에 通信·金融·農產物 3대分野 開放促求

*韓國經濟新聞 1989. 5. 19

〔表 6-3〕 美國의 情報通信分野 要求事項

項 目	內 容
電氣通信網을 基盤으로 한 非規制通信 (NT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 1월까지 현재 韓國政府가 지정한 事業體에게 유보된 事業以外 모든 NTNS 서비스提供을 美國人에게 許容할 것. 1989년 9월 1일까지 韓國獨占業體가 제공하는 獨占 電氣通信서비스와 활동 등에 관해 공개할 것. 1990년 1월 1일까지 原價方式 料金設定을 合理的이고 公平하게 設定할 것. 1990년 7월 1일까지 獨立의in 規制機關을 설치하여 競爭을 위한 措置를 취할 것. (1989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관 설립을 위한 法律을 제정하고 이法案 初案作成 때 美國과 協議할 것) 1990년 7월 1일까지 정기적 監督을 통해 美國人에게 被害를 입히는 反競爭의in 행위를 제거할 것.
投資制限 廢止	<ul style="list-style-type: none"> 韓國內에서 競爭서비스(NTNS)제공 혹은 企業內部通信을 위한 美國人們의 電氣通信器機販賣, 生產, 輸入, 流通活動에 있어 投資를 規制, 制限, 妨害하는 措置를 撤廢할 것. 1990년 1월 1일까지 電氣通信設備를 생산하거나 競爭서비스를 제공하는 既存 新規會社의 經營 또는 統制權을 韓國人에게만 국한시키기 말 것. 1990년 1월 1일까지 韓國內에서 DB와 DP分野投資에 대한 모든 制限을 撤廢할 것. 1991년 1월 1일까지 DB 및 DP를 제외한 競爭서비스(NTNS)의 提供에 대해 韓國 内 外國株式投資持分을 50%까지 허용할 것이며 1991년 1월 1일 이후에는 모든 競爭서비스의 提供에 대하여 韓國내의 外國投資持分 制限을 폐지할 것. 이외의 사항은 즉시 시행할 것.
標準制定 및 承認節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년 9월 1일까지 獨占서비스, 加入者宅內設備(CPE) 및 네트워크 電氣通信裝備 들에 대한 標準制定과 承認節次를 명확히 하는 初案作成. 非政府次元의 標準制定作業에서는 美國人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1990년 7월 1일부터 모든 有·無線加入者宅內設備 承認過程에서 美國 試驗調查 所 및 美國 製造業體들의 試驗成績書를 통해 美國人の 自己認證을 認定할 것.
政府購買	<ul style="list-style-type: none"> 政府物資 購買過程에서 美國 供給業者들 및 美國商品과 서비스의 供給業者들에게 公平한 機會를 부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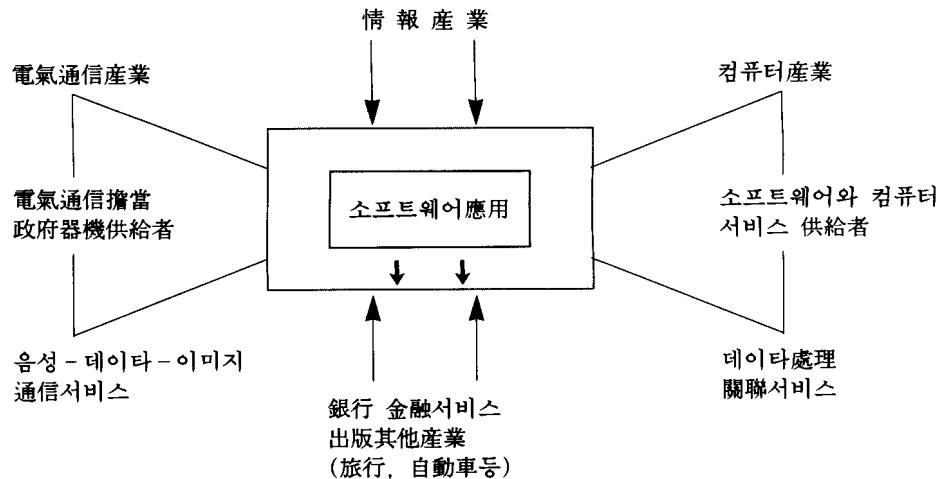
項 目	内 容
關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1993 電氣通信器機의 關稅率을 최대한 낮출 것. · 多者間貿易協商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電氣通信器機에 대한 關稅協商에 성실히 임할 것.
無線通信서비스 및 器機의 規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9월 1일까지 韓國市場의 公共 및 民間 電氣通信 無線서비스와 器機供給을 自由化할 것. · 1991년 7월 1일까지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美國의 試驗檢査所 및 製造業體들의 試驗成績書를 통해 美國人(業者)의 自己認證을 인정할 것. · 1991년 7월 1일까지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정기적인 試驗成績書의 再檢討로서 電氣通信器機의 輸入을 自由화할 것.
美國人 및 商品의 取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人과 美國 電氣通信商品에 대해 內國民待遇를 보장할 것.
協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概括的으로 技術된 約束 및 措置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美國政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에 동의할 것.
經過規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書에 명시된 約束들의 효력발생시까지 電氣通信商品 및 서비스에 대해 差別待遇를 擴大하지 않을 것.
國家安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開될 경우 국가의 중요한 安保利害에 위배된다고 간주되는 情報에 대한 접근을 韓國政府에 요구하는 것. · 국가의 중요한 安保利害의 保護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韓國政府가 취하지 못하게 하는것. 이 文書에 명시된 約束이 이와같이 해석될 수 없다.
美國人에 대한 定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市民 · 美國領主權者 · 美國法에 따라 組織된 團體 · 조작된 곳이나 事業場所에 관계없이 위에 명시된 사람들이 直·間接으로 所有, 統制하는 團體 · 韓國에 있는 團體로서 위에 명시된 사람들이 적어도 10%를 所有하는 것.

이와 같은 미국측 요구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중 NTNS(Non-Reserved Telecommunication Network-Based Service : 전기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非規制 通信)을 구분하여 NTNS는 개방하라는 것이다. NTNS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이것의 기본이 되는 TNS를 먼저 정의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설비와 소프트웨어기능을 사용한 정보의 생산, 처리, 저장 및 분배를 결합한 모든 서비스로 정의되는데 다음 [圖 6-1]은 전체 TNS시장구조와 산업참여자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미국이 기존의 부가가치서비스(Value-Added Service : VAS)라는 용어대신 TNS개념을 사용한 것은 기존의 VAS 개념이 DP(data process), DB(data base), 온라인 정보서비스등 전기통신산업을 중심으로한 개념인데 비하여 TNS라는 개념은 전기통신산업을 중심으로한 개념인데 비하여 TNS라는 개념은 전기통신산업, 컴퓨터산업 이외에 금융, 출판, 여행과 정보산업등 다른 산업부문이라도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모두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부문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이다. 즉 이와 같은 광범위한 TNS중에서 非規制 TNS(NTNS)를 정의하

(圖 6-1) TNS의 全體市場構造와 產業參與者



고 이를 미국에 개방하라는 것이다.

둘째, 内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통신망요금, 정부로부터의 각종 혜택, 국가기간망에의 접근, 설립권, NTNS定義, 기술표준제정 등에 있어서 자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외국 NTNS사업자가 전기통신부문이 대내적으로 개방된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중요한 원칙이고 이외에도 비차별 원칙, 명료성, 독립적 규제기관의 운영, NTNS에 대한 기준의 명확성 등으로 NTNS시장에 접근할 때 기본조건이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그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NTNS의 개념을 사용한 미국의 요구를 정리하면 [圖 6-2]와 같다. 이와같은 미국의 개방압력에 대응해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 몇가지 기본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보 문제, 둘째,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내의 수요기반 및 공급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완전개방 요구를 받아 국내자유화가 곧 대외개방으로 이어질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급속히 개방하면 우리 시장이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가진 선진 외국기업들에 의해 국내시장이 지배될 위험이 높다는 점, 세째, 정보통신산업이 민간에 개방이 허용될 때에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언론의 자유문제 등 경제외적인 문제⁹⁾(廣義로 정치 군사 사회 문화 국가주권문제도 모두 포함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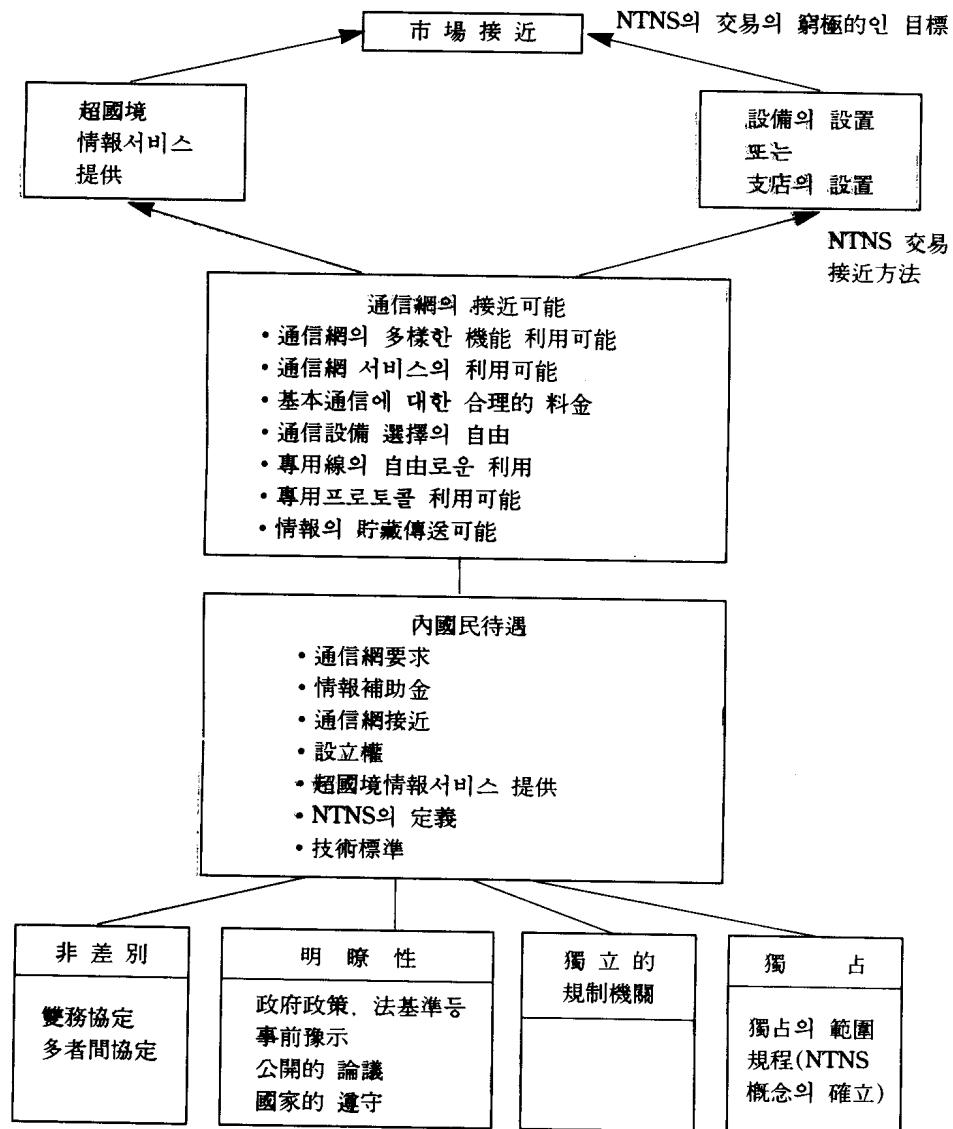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방석호(1988)¹⁰⁾은 향후 개방조치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9)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보호문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타인으로부터의 간섭배제라는 소극적 권리에서 자기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 변화하고 있다.

안경환, 미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1988 겨울 : 6-21 참조

10)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圖 6-2) NTNS概念의 對外交易適用



첫째, 정보통신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는 사업자별 구분방식에 중점을 둔 제도의 정비가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왜냐하면 정보통신사업은 서비스별로 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서비스 구분을 다시 해야 하는 등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한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보편적 서비스제공의 확보 및 중복투자의 방지를 위하여 통신망소유 및 음성전송서비스의 정부규제는 계속한다. 한국의 경우 국민의 기본통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틀이 이제 겨우 마련된 시점에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통신망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통신망의 설치 보유 및 관리는 일

정한 정부의 규제하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다양한 수요의 개발 및 충족을 위해서는 통신망의 설치, 보유, 관리 및 음성전송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민간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네째,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등 현재 전기통신관련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 결 론

정보통신이 기술혁신을 매개로 하여 정보처리와 융합됨으로써 산업영역은 대폭적으로 증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역할 및 지위는 급격히 부상하게 되고 각국마다 통신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자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화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시장경쟁원리의 도입은 정보통신이 달성해야 할 기본적인 공공성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두 가지 목적의 조화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해결방법은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고 한국도 이러한 두 목적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포함하는 대외적인 자유화진전에 따른 정보통신정책과 제도적 정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제국에서의 국내정보통신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무역 및 국제정보통신제도의 개편은 새로운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선두주자인 미국의 대 일본 대미 협약,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은 현재 국제경제에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은 미국측에 의해 우선 협상국으로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정보통신산업의 사회기간산업적 성격을 감안하면 동산업이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육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공중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구분, 고도서비스사업자와의 경쟁 시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문제, 대규모사설망의 표준화문제 및 인증문제 정보의 민간독점 현상, 대외종속문제, 국가안보 및 주권변질 등에 대한 제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参考文獻

- 大韓民國現行法令 제26권
- 大韓民國法令沿革集 제14권 (遞信編)
- 遞信部, 電氣通信에 관한 年次報告書, 1988.
- 產業研究院, 우루파이라운드 - 새로운 國際貿易秩序의 展開-1988.
- 通信開發研究院, ISDN - I시리즈 國際標準과 그 技術, 1988.
- , VAN 事業開放과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1988.
- 通信政策研究所, 1986年度 日本 郵政省의 通信에 관한 現像報告, 1987.
- , VAN 비즈니스, 1987.
- 방석호, VAN 事業開放과 活性化方案에 관한 研究, 通信開發研究院, 1988.

- 성극제, 世界貿易環境變化와 우리의 情報産業政策, 通信政策研究所, 1986.
- , 情報通信産業 및 서비스의 國際化 趨勢에 관한 研究, 1987.
- , 對外開放과 情報通信産業發展, 『情報通信의 發展과 經濟構造調整』 1990 : 1 - 29
- 서정희, 전기통신의 중요성과 미국의 개방요구, 통신개발연구원 Working paper
- 안경환, 美國의 プライバシ保護制度에 관한 研究, 通信政策動向, (88.겨울) : 6.21.
- 이천표, 서비스産業情報화와 經濟構造調整『情報通信의 發展과 經濟構造調整』 1990 : 89 - 108.
- 조임곤, TDF에 따른 國家主權問題, 通信政策動向, 1988, 가을 : 50 - 67.
- 조용길, 國際 VAN의 最近動向과 展望, 通信政策動向(1988, 겨울) : 56 - 77.
- 한수옹, 美國, 英國, 日本의 電氣通信政策動向, 通信政策動向(1988, 가을) : 78 - 97.
- , 電氣通信社業에 있어서 外國參與 規制(美國, 英國, 日本을 중심으로), 通信政策動向(1988, 春) : 50 - 61.
- 황성진, 電氣通信과 美國의 對外政策, 通信政策動向(1988, 春) : 4 - 81.
- 澄田誠, 石原昇, 21世紀へ向けた情報通信産業の展望と課題, 財界觀測, (1988.12) : 2 - 45.
- 生方幸夫, 「VANが動くビジネス変子」, 朝日新聞社, 1987.

〈附錄〉

NTT의 新資材 調達方式

(Track, I, II, III)

1. 目的

國內外 通信裝備市場에서, NTT의 統一된 시스템에 적합한 높은 品質과 信賴性이 있는 物品을 購買하는 데에 그 目的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國籍에 불문하고 公共通信裝備의 特性을 考慮하여 國內外 모든 供給者에게 競爭의 機會를 부여한다.

2. 調達物品의 對象 및 調達方法

調達物品의 對象範圍는 年間 購買額이 15萬 SDR을 넘는 物品의 調達에 적용하며 調達方法은 後述하는 Track I, II, III, II-A, III-A에 의한다. 한편, 業者의 便利를 圖謀하기 위해 年間事業計劃, 年度設備計劃 등 각종 情報를 公表한다.

3. 調達節次의 概要

NTT에 의해 購買되는 物品의 特性을 고려하여 Track I, II, III, II-A, III-A의 調達節次를 規程한다.

1) Track I

- (1) 日本 政府協定의 對象이 되는 物品의 調達에 적용하며, 政府調達物品에 정해진 수속에 의한다.
- (2) ① 節次는 原則적으로 公告를 한 다음, 資格을 조사한 후에, 競爭入札에 의해 落札者를 결정하고 契約을 체결한다.

단 緊急을 요하거나 互換性을 요하는 경우에는 隨意契約을 할 수도 있다.

2) Track Ⅱ

- (1) 市販製品으로서 그대로 이용 가능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公社가 요구하는 條件에 합치시키기 위해 改造가 가능한 公衆電氣通信設備의 調達에 적용한다.
- (2) 최초의 調達에서는 NTT가 提案要請 및 公告를 행하고 申請書를 제출한 業者 중에서 選定하여 合格된 業者와 契約을 체결하는데, 選定은 公正하고 差別없이 행하며 綜合評價에서 가장 유리한 業者를 合格시킨다.
- (3) 그 후의 調達에서는 새로운 參加者가 없는 한 통상 既存의 업자와 契約을 체결한다. 새로이 參加를 희망하는 業者의 申請은 수시로 接收, 選定하는데, 既存 納品業者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合格시켜 체결한다.

3) Track Ⅲ

- (1) 적당한 市販製品이 없어 公社가 開發할 필요가 있다고 認定되는 公衆電氣通信設備의 調達에 적용한다.
- (2) 최초의 調達에서는 參加招請 및 公告를 행하고, 申請書를 제출한 業者 중 研究開發 파트너를 선정하여, 試製품의 製造 및 現場試驗을 행하는 데, 이러한 過程을 성공리에 終了한 業者와 契約을 체결한다. 選定은 공정하고 差別없이 행하여, 研究能力開發을 포함한 綜合評價의 결과가 가장 유리한 業者와 研究開發 파트너로 한다.
- (3) 그 후 調達에서는 새로운 參加者가 없는 한, 통상 既存의 業者와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參加를 희망하는 申請에 대해서는 審查, 選定하는데, 既存의 納入資格業者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合格시켜 契約을 체결한다.

4) Track Ⅱ - A 및 Track Ⅲ - A

- (1) Track Ⅱ 혹은 Track Ⅲ에 의해 발주한 供給者에게서 계속 발주하는 수속을 밟는다.
- (2) 새로운 參加를 희망하는 供給者의 申請에 대하여 審查 및 選定을 하는데 既存의 納入資格業者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 供給者에게 발주한다.
- (3) Track Ⅱ 및 Track Ⅲ에서 契約을 체결한 供給者は 그대로 Track Ⅱ - A 및 Ⅲ - A 수속에 의해 계속적으로 調達 納入業者가 된다. 이런 納入業者를 納入資格業者라고 하는데, 이는 Track I의 有資格者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